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카이스트 발전재단에서는 채용절차 진행, 응시자의 직무역량, 자격조건 등의 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채용전형 시 지원자 심사 및 선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항목

구분	항목
필수항목	기본인적사항(이름, 이메일, 연락처)
선택항목	직무 관련 교육사항, 경력 및 경험사항, 자격증 보유사항
민감정보	보훈여부, 장애여부, 지역인재 여부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하신 정보는 채용 업무 관계자에 한해 보유 및 활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5년까지 보유하고 파기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채용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응시원서 접수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카이스트 발전재단 귀중

카이스트 발전재단 직원 채용 응시원서

0.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직무, 계약기간, 근무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합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증빙이 가능한 정보에 한해 작성합니다.
 - 응시원서에 작성한 내용 중 본인의 학벌, 출신지, 가족관계 등 공정채용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채용 공고문 및 유의사항 미숙지, 작성기준 위배, 허위사실 기재, 증빙불가한 사실 기재 등이 발견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인적사항 (필수)

지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입 <input type="checkbox"/> 경력	응시분야	
성명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긴급연락처		관계	
추가항목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 (가점비율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KAIST 청년인턴 (기간 : 20 . . . - 20 . . .) <input type="checkbox"/> 장애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역인재 <input type="checkbox"/> 청년 여부(15세 이상 ~ 34세 이하)		

2. 교육사항 (필수)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음.

학 교 교 육	교육기간	과목명 및 교육과정	이수학점
	yyyy-mm ~ yyyy-mm		
	직무관련 주요내용		
직 업 훈 련	교육기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yyyy-mm ~ yyyy-mm		
	직무관련 주요내용		
기 타	교육기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yyyy-mm ~ yyyy-mm		
	직무관련 주요내용		

자기소개서

1. 응시분야 지원동기를 기술하십시오.(600자 이내)

2. 모집분야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본인의 강점을 경험에 비추어 기술하십시오.(600자 이내)

3. 입사 이후 본인의 직무분야 전문성과 자기개발 위한 계획을 기술하십시오.(600자 이내)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있음□ / 없음□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있음□ / 없음□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나목)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나목에 비해당(중복적용 안됨)

년 월 일

지 원 자

인